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01호 2023. 12.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3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7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7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38호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7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203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표시하며 인천검단지구 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별도 첨부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1) 교통시설(변경)
 -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1	30 (20-39)	주간선도로	12035 (2,885)	평동 25-5 김포사계 (당하동 966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인고98-118 (98.6.12)	기존 고시 반영 인천광역시고시 22-226 (22.9.12)
변경	대로	2	61	30 (20-39)	주간선도로	12035 (2,885)	평동 25-5 김포사계 (당하동 966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인고98-118 (98.6.12)	일부구간 폭원변경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61	대로 2-61	· 연장·폭원 및 기·종점 변경없음 · 가감속차로 개설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 : 증)1,055.9㎡	· 물류 유통시설인 ‘유통2의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속차로 개설로 인한 도로면적 증가

-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물류유통시설(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유통2	-	37,505.0	당하동 1350대	37,505.0	
변경	유통2	-	36,499.1	당하동 1350대	36,499.1	

■ 물류유통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통2	당하동 1350대	· 면적 변경 - 37,505.0㎡ → 36,449.1㎡ 감)1,055.9㎡	· 가감속차로 1,055.9㎡ 도로 결정 및 무상 귀속에 따른 획지면적 감소

-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전체	1,2단계	전체	1,2단계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11,105,908.4	4,124,783.4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4,124,783.4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083,726.6	74.8	
	제1종전용주거지역	60,474.9	1.5	
	제1종일반주거지역	223,628.0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73.7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2,248,101.6	54.5	
	준주거지역	537,348.4	13.0	
상 업 지 역	소 계	236,279.8	5.7	
	일반상업지역	236,279.8	5.7	
녹 지 지 역	소 계	804,777.0	19.5	
	보전녹지지역	27,640.2	0.7	
	자연녹지지역	777,136.8	18.8	

2-1-1-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인천시 서구 원당동 신82-1임 일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1항에 따름	18,383	-	18,383	국고제2021-1171호 (21.10.26.)	

2-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2-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40 (40~52)	주간선도로	7,167 (2,932)	동축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 2-495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118 (98.6.12)	신형변경 교통광장81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61	30 (20~39)	주간선도로	12,035 (2,885)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검단 신도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 (1998.6.12)	기존 고시 반영 인천광역시 고시 22-226 (22.9.12)
변경	대로	2	61	30 (20~39)	주간선도로	12,035 (2,885)	계양구 평동 25-5 김포시계	서구 왕길동 63-9	일반도로	검단 신도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 (1998.6.12)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2	78	33.5 (33.5~54.3)	주간선도로	5,496	남측 지구계 (당하동 478-1답)	광 3-27 (불로동 505-6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대로	3	154	26.5 (26.5~29.5)	보조간선도로	465	대 2-78 (원당동 1017도)	동축 지구계 (원당동 산1-1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08	20 (20~22)	집산도로	1,571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1-413 (원당동 10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09	20	집산도로	379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1-411 (당하동 127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0	20	국지도로	332	중 1-411 (당하동 1273도)	중 1-513 (당하동 127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1	23.5 (23.5~30.5)	보조간선도로	1,287	광 3-23 (당하동 1228도)	대 2-61 (당하동 661-17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2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2	23.5	보조간선도로	541	대 2-78 (당하동 1238도)	중 1-411 (당하동 123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3	23.5 (23.5~30)	보조간선도로	1,061	대 2-78 (당하동 1238도)	대 3-153 (원당동 2-8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중로2-944 호선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4	20 (20~26)	집산도로	470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13 (원당동 10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415	21	집산도로	30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8 (원당동 102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6	20 (20~21)	집산도로	43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7	23.5 (23.5~29.5)	보조간선도로	994	광 3-23 (원당동 1044도)	대 2-78 (원당동 101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8	23.5 (23.5~30.6)	집산도로	538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21 (원당동 102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19	23.5 (20.25~26.5)	집산도로	1,179	동축지구계 (원당동 11-2답)	대 3-154 (원당동 98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0	20	집산도로	31	중 1-419 (원당동 1013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1	20 (20~26)	집산도로	364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9 (원당동 101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2	20	집산도로	393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423	26.5	집산도로	436	중 1-421 (원당동 1023도)	대 3-154 (원당동 98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02	20	집산도로	606	광 3-23 (마전동 520-5도)	대 2-61 (당하동 847-1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3	20	집산도로	610	대 2-61 (당하동 835-4구)	남측지구계 (당하동 1003-9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12	23.5 (20.5~29.5)	국지도로	1,368	중 1-411 (당하동 1234도)	중1-504 (당하동 750-11잡)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1	513	21	집산도로	614	대 2-61 (당하동 656-2답)	중1-512 (당하동 125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49	16 (16~19)	집산도로	436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1-408 (당하동 130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50	16	집산도로	386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2-449 (당하동 131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1	16 (16~18)	집산도로	467	대2-78 (당하동 1277도)	중 1-411 (당하동 127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2	16	국지도로	314	중 1-412 (당하동 1244도)	중 2-451 (당하동 131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3	15	국지도로	483	중 1-413 (원당동 1087도)	중1-414 (원당동 106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하천1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454	16.5	집산도로	435	대2-78 (원당동 1017도)	중 1-414 (원당동 106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5	16.5	집산도로	85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2-454 (원당동 106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6	16.5	집산도로	266	대2-78 (당하동 1238도)	광 3-23 (당하동 122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7	16.5	국지도로	238	중 1-418 (원당동 1025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8	16.5	집산도로	167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1-415 (원당동 102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59	16.5	국지도로	273	중 2-457 (원당동 1034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0	16.5	국지도로	515	중 1-416 (원당동 1037도)	중 1-416 (원당동 103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1	16.5	국지도로	214	중 2-460 (원당동 1039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도로	248	중 1-419 (원당동 1013도)	동측지구계 (원당동 101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496	16	국지도로	213	중1-502 (마전동 203-1임)	서측지구계 (당하동 910-4잡)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2	819	15	국지도로	291	중1-503 (당하동 805-1도)	중2-498 (당하동 765-33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1	12.5	국지도로	262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3-242 (당하동 1286-1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2	12.5	국지도로	300	중 1-413 (당하동 1279도)	중 2-450 (당하동 128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3	13	국지도로	326	중 3-555 (당하동 1245도)	중 3-553 (당하동 124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4	13	국지도로	20	중 3-555 (당하동 1245도)	중 3-553 (당하동 124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5	12.5	국지도로	262	중 1-412 (당하동 1244도)	중 1-411 (당하동 123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6	13	국지도로	22	중 1-419 (원당동 1013도)	중3-557 (원당동 9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57	13	국지도로	183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중로	3	572	12	국지도로	180	중1-502 (마전동 522-5대)	소 1-209(마전) (마전동 545-4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기정	소로	1	209	10	국지도로	162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542답)	22호 경관녹지 (마전동 산81-14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마전
기정	소로	1	201	10	특수도로	106	원당동 1082-3대 (원당동 1082-3대)	4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7-6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하천1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02	10	특수도로	56	당하동 1241-1대 (당하동 1241-1대)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잡)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하천2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203	10	국지도로	23	중 2-456 (당하동 1236도)	2호 일반광장 (당하동 1235-5잡)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4	10	특수도로	108	13호 경관녹지 (당하동 1235-11공)	광 3-23 (당하동 122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5	10	특수도로	48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6	10	특수도로	193	중 2-460 (원당동 1039도)	3호 일반광장 (원당동 1043잡)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7	10	특수도로	41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8	10	특수도로	50	대 2-78 (원당동 1017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09	10	특수도로	93	중 2-458 (원당동 1029도)	대 2-78 (원당동 101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10	10	특수도로	94	중 1-419 (원당동 1013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1	214	10	특수도로	160	중 2-460 (원당동 1039도)	중 1-417 (원당동 1019도)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원당
기정	소로	1	219	10	특수도로	60	중1-414 (원당동 1062도)	7호 어린이공원 (원당동 1065-1공)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1	201	10	국지도로	13	대 2-61 (당하동 661-12도)	남측지구계 (당하동 660-4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2	11	국지도로	63	중 1-408 (당하동 1307도)	동측지구계 (당하동 41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3	11	국지도로	140	대2-78 (당하동 1277도)	6호 소공원 (당하동 1276-3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4	12.5	국지도로	161	대2-78 (당하동 1238도)	중 1-412 (당하동 124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5	11	국지도로	84	중 2-451 (당하동 1319도)	2호 어린이공원 (당하동 1318-9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6	10	특수도로	149	중 1-411 (당하동 1273도)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8	11 (8~11)	국지도로	74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9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09	11	국지도로	733	중 1-411 (당하동 1234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354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1	11	국지도로	195	중1-503 (당하동 789대)	중2-819 (당하동 794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2	11	국지도로	144	중1-503 (당하동 788대)	당하동 820-2대 (당하동 820-2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1	213	10	특수도로	65	광 3-23 (당하동 1228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하천2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443	중 1-414 (원당동 1062도)	중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68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61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50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7	8 (8~11)	국지도로	383	광 3-23 (당하동 1044도)	소 2-208(원당) (원당동 10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26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산87묘)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89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73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53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8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산87묘)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246	중3-557 (원당동 996도)	중 2-462 (원당동 9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6	8	국지도로	72	중3-557 (원당동 996도)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7	8	국지도로	101	소 2-216(원당) (원당동 1006도)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8	8	국지도로	84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보행자 우선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19	8	국지도로	153	중 3-557 (원당동 996도)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225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1	8	국지도로	268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2	8	국지도로	20	중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23	8	국지도로	20	중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110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91	중 2-449 (당하동 1315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108	소 2-202(당하) (당하동 1296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137	중 2-450 (당하동 1285도)	중3-551 (당하동 128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133	소 2-204(당하) (당하동 1294도)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113	중3-551 (당하동 1287도)	소 2-204(당하) (당하동 1296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101	소 2-204(당하) (당하동 1303도)	소 2-206(당하) (당하동 1294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38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당하동 188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61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332-2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327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41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199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3	8	국지도로	42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4	8	국지도로	40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원당지구 동측구역계 (원당동 188-1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171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소 1-209(당하) (당하동 125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30	8	국지도로	58	소 2-231(당하) (당하동 817답)	소 1-212(당하) (당하동 817답)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1	8	국지도로	202	소 1-212(당하) (당하동 815답)	소 1-212(당하) (당하동 820-4대)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2	8	국지도로	237	중2-450 (당하동 1285도)	중2-450 (당하동 128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2	238	8	국지도로	20	소 2-203(당하) (당하동 1293도)	중 3-551 (당하동 1293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85	6	국지도로	357	중 1-502 (미전동 526-4답)	남서측지구계 (미전동 산99-9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마전
기정	소로	3	286	6 (2'6)	국지도로	160	소3-285(마전) (미전동 526-7도)	남서측지구계 (미전동 산97-8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마전
기정	소로	3	203	6	특수도로	156	광 3-23 (원당동 337-7답)	중 2-453 (원당동 106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13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소 3-205(원당) (원당동 1067-12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5	6	특수도로	7	소 3-204(원당) (원당동 1067-13도)	소 1-201(원당) (원당동 1067-1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6	6	특수도로	20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2-201(원당) (원당동 108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8	6	특수도로	39	광 3-23 (원당동 1036도)	중 2-457 (원당동 103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09	6	특수도로	30	중 2-457 (원당동 1034도)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0	6	특수도로	191	중 2-459 (원당동 1032도)	중 2-458 (원당동 102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1	6	특수도로	30	중 2-459 (원당동 1032도)	소 3-210(원당) (원당동 1033-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2	6	특수도로	33	중 2-459 (원당동 1032도)	중 1-415 (원당동 102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3	6	특수도로	15	중 1-418 (원당동 1025도)	소 3-214(원당) (원당동 103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4	6	국지도로	17	중 2-459 (원당동 1032도)	소 3-213(원당) (원당동 1030-9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5	6	특수도로	44	광 3-23 (원당동 1044도)	중 2-460 (원당동 1039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6	6	특수도로	42	중 2-460 (원당동 1039도)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7	6	특수도로	32	중 2-461 (원당동 1042도)	소 1-206(원당) (원당동 1043-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8	6	특수도로	32	중 1-416 (원당동 1037도)	중 2-461 (원당동 104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19	6	특수도로	115	중 1-423 (원당동 1015도)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원당
기정	소로	3	220	6	특수도로	21	6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소 2-207(원당) (원당동 104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1	6	특수도로	15	소 3-239(원당) (원당동 1009도)	소 1-210(원당) (원당동 1000-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2	6	특수도로	30	소 2-215(원당) (원당동 999도)	대 김포3-8 (원당동 101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3	6	특수도로	40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소 2-218(원당) (원당동 100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4	6	특수도로	40	중 3-557 (원당동 996도)	소 2-217(원당) (원당동 100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5	6	특수도로	22	중 1-419 (원당동 1013도)	중 3-557 (원당동 996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6	6	특수도로	20	소 2-219(원당) (원당동 998도)	중 2-462 (원당동 9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7	6	특수도로	20	중 2-462 (원당동 994도)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28	6	특수도로	40	소 2-220(원당) (원당동 992도)	소 2-221(원당) (원당동 990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29	6	특수도로	22	대 3-154 (원당동 988도)	소 3-238(원당) (원당동 992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0	6	특수도로	115	중 1-423 (원당동 1015도)	3호 근린공원 (원당동 1016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5	6	특수도로	7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3-240(원당) (원당동 1071-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6	6	특수도로	7	중 2-454 (원당동 1066도)	소 3-241(원당) (원당동 1067-8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원당
기정	소로	3	237	7	국지도로	67	대3-154 (원당동 988도)	7호 근린공원 (원당동 986공)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38	6	국지도로	5	소2-220(원당) (원당동 992도)	소3-229(원당) (원당동 989-1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39	6	국지도로	8	중3-557 (원당동 996도)	소3-221(원당) (원당동 1000-10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원당
기정	소로	3	203	6	국지도로	13	소 2-201(당하) (당하동 1294도)	소 3-246(당하) (당하동 1292-5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5	6	특수도로	22	중 3-551 (당하동 1287도)	대 2-78 (당하동 127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6	6	특수도로	15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05(당하) (당하동 12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7	6	특수도로	22	중 3-551 (당하동 1287도)	소 2-207(당하) (당하동 1294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8	6	특수도로	12	대 2-78 (당하동 1277도)	소 3-241(당하) (당하동 1286-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09	6	특수도로	38	대 2-78 (당하동 1277도)	중 3-552 (당하동 1281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10	6	특수도로	20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5호 근린공원 (당하동 1256-10공)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0	4	특수도로	40	소 2-212(당하) (당하동 1259도)	소 2-210(당하) (당하동 1257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1	6	특수도로	22	중1-503 (당하동 789-2대)	소 1-211(당하) (당하동 781대)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2	6	특수도로	29	소 1-211(당하) (당하동 787-2대)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783-3대)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3	6	특수도로	199	중1-503 (당하동 792-2대)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861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4	6	특수도로	7	소 3-235(당하) (당하동 861전)	소 3-233(당하) (당하동 821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5	6	국지도로	13	소 1-212(당하) (당하동 820-2대)	소 3-234(당하) (당하동 861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6	6	국지도로	8	소 2-231(당하) (당하동 820-11대)	21호 경관녹지 (당하동 1003-9구)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7	6	특수도로	20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8	6	특수도로	20	중 2-450 (당하동 1285도)	소 2-232(당하) (당하동 1283도)	보행자도로		국고15-760 (15.10.27)	당하
기정	소로	3	239	5	특수도로	123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중 1-513 (당하동 1271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0	5	특수도로	123	4호 근린공원 (당하동 1272-1공)	중 1-513 (당하동 1271도)	보행자도로		국고18-335 (18.06.18)	당하
기정	소로	3	242	6	국지도로	10	중3-551 (당하동 1293도)	소3-245(당하) (당하동 1286-13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3	6	국지도로	10	중3-553 (당하동 1247도)	소3-247(당하) (당하동 1246-1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5	6	특수도로	10	중2-449 (당하동 1315도)	소3-242 (당하동 1286-12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47	6	특수도로	11	중3-555 (당하동 1245도)	소3-243 (당하동 1251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51	6	국지도로	10	중 3-553 (당하동 1247도)	소3-252(당하) (당하동 1246-5도)	일반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기정	소로	3	252	6	특수도로	11	중 1-411 (당하동 1234도)	소3-251(당하) (당하동 1252도)	보행자도로		국고19-967 (20.1.16)	당하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61	대로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폭원 및 기·종점 변경없음 가감속차로 개설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 : 증)1,0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유통시설인 '유통2'의 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가감속차로 개설로 인한 도로면적 증가

2-1-2-2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458.4	-	5,458.4	-	3개소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5 잡	2,581.4	-	2,581.4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 잡	1,702.0	-	1,702.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 잡	1,175.0	-	1,175.0	국고2015-760 (15.10.27)		

(2)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9,165.9	-	399,165.9	-	19개소
소계					-	352,401.7	-	352,401.7	-	7개소
기정	1	새별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 공 일원	34,663.6	-	34,663.6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아라 센트럴파크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 공	55,690.3	-	55,690.3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도담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 공	28,592.8	-	28,592.8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아라노을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1 공 일원	48,206.9 (105,818.9)	-	48,206.9 (105,818.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맑은물빛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69-3 공 일원	32,687.5	-	32,687.5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아라보타닉 파크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6 공	88,897.2 (219,475.2)	-	88,897.2 (219,475.2)	국고2015-760 (15.10.27)	대로2-78 중복결정 17,00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산들바람 공원	근린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6 공	63,663.4 (223,781.4)	-	63,663.4 (223,781.4)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30,078.1	-	30,078.1	-	8개소
기정	1	가람풍경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2 공	2,912.3	-	2,912.3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해든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9 공	8,251.8	-	8,251.8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동글동글 나이테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1 공	2,283.2	-	2,283.2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재미한창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6 공	1,763.9	-	1,763.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윗목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4 공	4,699.1	-	4,699.1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아랫목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1 공	2,159.9	-	2,159.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7	바래미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1 공	3,794.0	-	3,794.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4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1337-9공	4,213.9	-	4,213.9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2,216.7	-	2,216.7		2개소
기정	6	광명큰나무 공원	소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6-3 공	941.0	-	941.0	국고2019-967 (20.1.6)	
기정	7	아름드리 공원	소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6-9 공	1,275.7	-	1,275.7	국고2019-967 (20.1.6)	
소계				-	12,677.6	-	12,677.6	-	1개소
기정	1	두물머리 공원	수변 공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1 공 일원	12,677.6	-	12,677.6	국고2015-760 (15.10.27)	유수지② 6,256㎡ 중복결정
소계				-	1,791.8	-	1,791.8	-	1개소
기정	1	활력공원	문화 공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1 공	1,791.8	-	1,791.8	-	

주) ()는 전체 면적임

(3)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72,121.0	-	272,121.0	-	19개소
소계				-	35,719.5	-	35,719.5	-	7개소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7 공	3,388.9	-	3,388.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1058 공 일원	3,585.2	-	3,585.2	국고2015-760 (15.10.27)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29-5 공	1,957.9	-	1,957.9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 공	7,749.0	-	7,749.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7-2 공	8,700.0	-	8,7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5-1공	6,317.5	-	6,317.5	국고2015-760 (15.10.27)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7-2공	4,021.0	-	4,021.0	국고2015-760 (15.10.27)	
소계				-	185,856.5	-	185,856.5	-	12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3공	3,728.4	-	3,728.4	국고2015-760 (15.10.27)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1공	40,444.5 (65,545.5)	-	40,444.5 (65,545.5)	국고2018-335 (18.06.18)	중로1-504 중복결정 780㎡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50-1공	9,774.9 (12,897.9)	-	9,774.9 (12,897.9)	국고2019-967 (20.1.6)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4-1공 일원	7,139.7	-	7,139.7	국고2019-967 (20.1.6)	
기정	9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공 일원	26,536.7 (26,970.7)	-	26,536.7 (26,970.7)	국고2019-967 (20.1.6)	
기정	10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94-4 공 일원	33,269.4	-	33,269.4	국고2019-967 (20.1.6)	
기정	1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1 공 일원	14,927.3 (15,478.3)	-	14,927.3 (15,478.3)	국고2019-967 (20.1.6)	
기정	12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 공 일원	10,403.3	-	10,403.3	국고2019-967 (20.1.6)	
기정	13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11 공 일원	11,407.3	-	11,407.3	국고2019-967 (20.1.6)	
기정	14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9-2 공 일원	7,970.5 (29,306.5)	-	7,970.5 (29,306.5)	국고2019-967 (20.1.6)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공 일원	13,946.1	-	13,946.1	국고2019-967 (20.1.6)	
기정	22	녹지	경관 녹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공 일원	6,308.4	-	6,308.4	국고2019-967 (20.1.6)	

주) ()는 전체 면적임

2-1-2-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190	-	6,190	-	1개소
기정	4	가스공급설비	인천시 서구 당하동 749-31주 일원	6,190	-	6,190	국고2015-760 (15.10.27)	당하관리소

2-1-2-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140,059.6	-	140,059.6	-	10개소
초등학교 소계			-	-	70,052.1	-	70,052.1	-	5개소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3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14,001.0	-	14,001.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14,026.6	-	14,026.6	국고2015-760 (15.10.2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14,024.5	-	14,024.5	국고2015-760 (15.10.27)	
중학교 소계			-	-	28,000.2	-	28,000.2	-	2개소
기정	1	학교	중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14,000.0	-	14,000.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학교	중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14,000.2	-	14,000.2	국고2015-760 (15.10.27)	
고등학교 소계			-	-	30,007.3	-	30,007.3	-	2개소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학	15,007.0	-	15,007.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학교	고등학교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학	15,000.3	-	15,000.3	국고2015-760 (15.10.27)	
특수학교 소계			-	-	12,000.0	-	12,000.0	-	1개소
기정	1	학교	특수학교	인천시 서구 당하동 779-4대 일원	12,000.0	-	12,000.0	국고2015-760 (15.10.27)	

2-1-2-5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5.55	-	215,256.5	감) 40.0	215,216.5	-	2개소	
기정	1	계양천	지방2급하천	계양구 목상동 (당하동 964-7구)	서구 원당동 17-6답	매천 합류점	2.09	24~50	102,090.7	-	102,090.7	인고252 (03.12.29)	지구내
기정	2	매천	소하천	서구 당하동 1228도	서구 당하동 1304천	-	1.27	15~35	31,907.8	-	31,907.8	인고80 (99.6.23)	지구내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818㎡) 포함

- 도로중복 : 중로1-408, 중로1-413, 중로1-414, 중로2-449, 중로2-453

- 보행자중복 : 소로1-201(원당), 소로3-244(당하)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5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 도로중복 : 광로3-23, 대로2-78, 중로1-411

- 보행자중복 : 소로 1-202(원당), 소로1-213(당하)

(2)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7,543.0	-	37,543.0	-	4개소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10,956.0	-	10,956.0	국고2015-760 (15.10.27)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유	6,256.0	-	6,256.0	국고2015-760 (15.10.27)	수변공원① 중복결정

2-1-2-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가)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4,620	-	4,620	인고4 (05.1.5)	

2-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1-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E1	①	1,712.3	1	당하동 1260-12 대	244.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0-11 대	245.2	
			3	당하동 1260-10 대	244.8	
			4	당하동 1260-9 대	244.0	
			5	당하동 1260-8 대	243.9	
			6	당하동 1260-7 대	244.8	
			7	당하동 1260-6 대	244.8	
	②	1,178.3	1	당하동 1260-4 대	234.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0-3 대	235.0	
				당하동 1260-2 대	235.0	
				당하동 1260-1 대	236.5	
				당하동 1260 대	237.3	
	③	1,107.6	1	당하동 1229-10 대	223.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29-9 대	221.0	
				당하동 1229-8 대	221.0	
				당하동 1229-7 대	220.9	
				당하동 1229-6 대	220.8	
	④	2,659.4	1	당하동 1258-2 대	241.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58-3 대	241.7	
				당하동 1258-4 대	241.9	
				당하동 1258-5 대	242.2	
				당하동 1258-6 대	241.6	
				당하동 1258-7 대	237.6	
				당하동 1258-12 대	241.0	
				당하동 1258-11 대	241.8	
				당하동 1258-10 대	241.9	
				당하동 1258-9 대	243.1	
				당하동 1258-8 대	244.7	
	⑤	973.9	1	당하동 1264-4 대	243.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4-5 대	243.2	
				당하동 1264-3 대	246.0	
				당하동 1264-2 대	241.1	
	⑥	885.3	1	당하동 1264-6 대	219.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4-7 대	221.9	
				당하동 1264-8 대	222.6	
				당하동 1264 대	221.3	
	⑦	3,248.8	1	당하동 1261-7 대	250.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당하동 1261-8 대	249.9	
				당하동 1261-9 대	250.3	
				당하동 1261-10 대	250.5	
				당하동 1261-11 대	249.6	
				당하동 1261-12 대	249.5	
당하동 1261 대				250.5		
당하동 1261-6 대				250.4		
당하동 1261-5 대				248.9		
당하동 1261-4 대				249.1		
당하동 1261-3 대				249.4		
당하동 1261-2 대				24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E2	⑧	2,285.2	13	당하동 1261-1 대	251.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231-5 대	254.2	
			2	당하동 1231-6 대	254.0	
			3	당하동 1231-7 대	254.0	
			4	당하동 1231-8 대	253.9	
			5	당하동 1231 대	254.0	
			6	당하동 1231-4 대	252.5	
			7	당하동 1231-3 대	254.1	
			8	당하동 1231-2 대	254.2	
	9	당하동 1231-1 대	254.3			
	⑨	1,104.2	1	당하동 1256-4 대	220.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56-3 대	220.7	
			3	당하동 1256-2 대	220.7	
			4	당하동 1256-1 대	220.2	
5			당하동 1256 대	222.0		
⑩	1,104.3	1	당하동 1267-4 대	221.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7-3 대	219.6		
		3	당하동 1267-2 대	220.9		
		4	당하동 1267-1 대	220.3		
		5	당하동 1267 대	222.0		
⑪	714.4	1	당하동 1269-6 대	240.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9-5 대	237.3		
		3	당하동 1269-4 대	236.7		
⑫	666.8	1	당하동 1269-2 대	221.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9-1 대	221.8		
		3	당하동 1269 대	223.2		
⑬	2,227.4	1	당하동 1262-9 대	248.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62-8 대	247.2		
		3	당하동 1262-7 대	247.3		
		4	당하동 1262-6 대	247.3		
		5	당하동 1262-5 대	247.3		
		6	당하동 1262-4 대	247.2		
		7	당하동 1262-3 대	246.9		
		8	당하동 1262-2 대	247.2		
		9	당하동 1262-1 대	248.5		
⑭	1,044.2	1	당하동 1229-4 대	260.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29-3 대	261.1		
		3	당하동 1229-2 대	261.1		
		4	당하동 1229-1 대	261.1		
E2	①	2,399.0	1	원당동 1048 대	240.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8-1 대	240.0	
			3	원당동 1048-2 대	240.2	
			4	원당동 1048-3 대	240.6	
			5	원당동 1048-4 대	240.0	
			6	원당동 1048-5 대	240.0	
			7	원당동 1048-6 대	240.1	
			8	원당동 1048-7 대	240.5	
			9	원당동 1048-8 대	238.9	
			10	원당동 1048-9 대	238.5	
②	1,228.3	1	원당동 1047-1 대	245.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7 대	245.9		
		3	원당동 1047-2 대	245.8		
		4	원당동 1047-3 대	24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1	③	1,886.5	5	원당동 1047-4 대	245.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50-3 대	205.9			
			2	원당동 1050-2 대	249.1			
			3	원당동 1050-1 대	249.1			
			4	원당동 1050 대	239.5			
			5	원당동 1050-4 대	261.8			
			6	원당동 1050-5 대	224.1			
			7	원당동 1050-6 대	224.1			
	④	2,335.9	1	원당동 1052-4 대	209.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52-3 대	242.4			
			3	원당동 1052-2 대	242.4			
			4	원당동 1052-1 대	242.4			
			5	원당동 1052 대	233.4			
			6	원당동 1052-5 대	256.5			
			7	원당동 1052-6 대	225.1			
			8	원당동 1052-7 대	225.3			
			9	원당동 1052-8 대	225.3			
			10	원당동 1052-9 대	233.5			
	⑤	3,116.4	1	원당동 1056-5 대	238.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56-4 대	239.7			
			3	원당동 1056-3 대	240.3			
			4	원당동 1056-2 대	240.0			
			5	원당동 1056-1 대	240.3			
			6	원당동 1056 대	240.3			
			7	원당동 1056-6 대	239.0			
			8	원당동 1056-7 대	239.7			
			9	원당동 1056-8 대	239.6			
			10	원당동 1056-9 대	239.7			
			11	원당동 1056-10 대	239.6			
			12	원당동 1056-11 대	239.6			
			13	원당동 1056-12 대	239.9			
	⑥	2,038.4	1	원당동 1045 대	255.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45-1 대	254.1			
			3	원당동 1045-2 대	253.8			
			4	원당동 1045-3 대	254.1			
			5	원당동 1045-4 대	253.9			
			6	원당동 1045-5 대	254.0			
			7	원당동 1045-6 대	256.7			
			8	원당동 1045-7 대	256.6			
⑦	468.6	1	원당동 1055-1 대	234.2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및 분할불가			
		2	원당동 1055-2 대	234.4				
①	882.0	1	당하동 1290-2 대	29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0-1 대	294.0				
		3	당하동 1290 대	294.0				
		②	2,189.5	1		당하동 1290-4 대	271.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0-5 대	274.0	
				3		당하동 1290-6 대	274.0	
				4		당하동 1290-7 대	274.0	
				5		당하동 1290-8 대	274.0	
				6		당하동 1290-9 대	274.0	
				7		당하동 1290-10 대	274.0	
				8		당하동 1290-11 대	274.0	
③	3,105.0	1	당하동 1297-1 대	26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7-2 대	259.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3	당하동 1297-3 대	259.0				
			4	당하동 1297-4 대	259.0				
			5	당하동 1297-5 대	259.0				
			6	당하동 1297-6 대	260.0				
			7	당하동 1297 대	258.0				
			8	당하동 1297-11 대	259.0				
			9	당하동 1297-10 대	258.0				
			10	당하동 1297-9 대	258.0				
			11	당하동 1297-8 대	258.0				
			12	당하동 1297-7 대	258.0				
			④	2,574.0	1		당하동 1295-1 대	259.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5-2 대	258.0	
3	당하동 1295-3 대	257.0							
4	당하동 1295-4 대	257.0							
5	당하동 1295-5 대	258.0							
6	당하동 1295 대	256.0							
7	당하동 1295-9 대	257.0							
8	당하동 1295-8 대	257.0							
9	당하동 1295-7 대	257.0							
10	당하동 1295-6 대	258.0							
⑤	1,327.0	1	당하동 1288-4 대	267.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8-3 대	265.0					
		3	당하동 1288-2 대	265.0					
		4	당하동 1288-1 대	265.0					
		5	당하동 1288 대	265.0					
⑥	1,270.0	1	당하동 1292 대	254.0					
		2	당하동 1292-1 대	254.0					
		3	당하동 1292-2 대	254.0					
		4	당하동 1292-3 대	254.0					
		5	당하동 1292-4 대	254.0					
⑦	2,357.8	1	당하동 1299-1 대	261.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9-2 대	262.0					
		3	당하동 1299-3 대	262.0					
		4	당하동 1299-4 대	262.0					
		5	당하동 1299-5 대	262.0					
		6	당하동 1299 대	262.0					
		7	당하동 1299-8 대	262.0					
		8	당하동 1299-7 대	262.0					
		9	당하동 1299-6 대	262.0					
⑧	2,288.6	1	당하동 1300-1 대	253.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00-2 대	254.0					
		3	당하동 1300-3 대	254.0					
		4	당하동 1300-4 대	254.0					
		5	당하동 1300 대	257.0					
		6	당하동 1300-8 대	254.0					
		7	당하동 1300-7 대	254.0					
		8	당하동 1300-6 대	254.0					
		9	당하동 1300-5 대	253.8					
⑨	1,338.3	1	당하동 1292-7 대	26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92-8 대	267.0					
		3	당하동 1292-9 대	267.0					
		4	당하동 1292-10 대	26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2	⑩	1,413.5	5	당하동 1292-11 대	268.3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286-18 대	283.0	
			2	당하동 1286-17 대	283.0	
			3	당하동 1286-16 대	283.0	
			4	당하동 1286-15 대	283.0	
	⑪	723.7	1	당하동 1284 대	241.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1 대	241.0	
			3	당하동 1284-2 대	241.0	
	⑫	1,269.0	1	당하동 1284-4 대	253.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5 대	254.0	
			3	당하동 1284-6 대	254.0	
			4	당하동 1284-7 대	254.0	
			5	당하동 1284-8 대	254.0	
	⑬	1,102.0	1	당하동 1284-10 대	27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4-11 대	275.0	
			3	당하동 1284-12 대	276.0	
			4	당하동 1284-13 대	276.0	
	⑭	1,341.0	1	당하동 1282-7 대	269.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2-8 대	268.0	
			3	당하동 1282-9 대	268.0	
			4	당하동 1282-10 대	268.0	
			5	당하동 1282-11 대	268.0	
	①	1,929.8	1	원당동 1071-5 대	276.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1-6 대	275.8	
3			원당동 1071-7 대	276.0		
4			원당동 1071-8 대	276.0		
5			원당동 1071-9 대	275.0		
6			원당동 1071-10 대	275.0		
7			원당동 1071-11 대	276.0		
②		731.0	1	원당동 1071-2 대	24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1-1 대	243.0	
			3	원당동 1071 대	244.0	
③		720.0	1	원당동 1069-6 대	24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9-5 대	240.0	
			3	원당동 1069-4 대	240.0	
④		873.0	1	원당동 1073-1 대	291.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3-3 대	291.0	
			3	원당동 1073-2 대	291.0	
⑤		1,986.0	1	원당동 1075-1 대	24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5-2 대	248.0	
			3	원당동 1075-3 대	248.0	
			4	원당동 1075-4 대	248.0	
			5	원당동 1075 대	249.0	
	6		원당동 1075-7 대	248.0		
	7		원당동 1075-6 대	248.0		
	8		원당동 1075-5 대	249.0		
⑥	1,701.0	1	원당동 1077-1 대	283.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77-2 대	284.0		
		3	원당동 1077-3 대	283.0		
		4	원당동 1077 대	284.0		
		5	원당동 1077-5 대	283.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F3	⑦	1,113.0	6	원당동 1077-4 대	28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79-1 대	278.0	
			2	원당동 1079-2 대	279.0	
			3	원당동 1079 대	278.0	
	⑧	3,688.6	1	원당동 1067-27 대	26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7-26 대	263.0	
			3	원당동 1067-25 대	263.0	
			4	원당동 1067-24 대	263.0	
			5	원당동 1067-23 대	263.0	
			6	원당동 1067-22 대	263.0	
			7	원당동 1067-21 대	263.0	
			8	원당동 1067-20 대	263.0	
			9	원당동 1067-19 대	262.8	
			10	원당동 1067-18 대	262.8	
			11	원당동 1067-17 대	263.0	
			12	원당동 1067-16 대	264.0	
			13	원당동 1067-15 대	264.0	
			14	원당동 1067-14 대	266.0	
	⑨	702.0	1	원당동 1069-2 대	23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69-1 대	234.0	
3			원당동 1069 대	234.0		
⑩	607.0	1	원당동 1067-10 대	304.0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2	원당동 1067-9 대	303.0		
F3	①	1,089.7	1	원당동 989-3 대	272.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89-4 대	272.0	
			3	원당동 989-5 대	272.9	
			4	원당동 989-6 대	272.8	
	②	3,364.2	1	원당동 991-8 대	258.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1-9 대	258.9	
			3	원당동 991-10 대	259.3	
			4	원당동 991-7 대	259.6	
			5	원당동 991-6 대	258.7	
			6	원당동 991-5 대	259.2	
			7	원당동 991-4 대	259.1	
			8	원당동 991-3 대	259.4	
			9	원당동 991-11 대	258.5	
			10	원당동 991-12 대	258.2	
			11	원당동 991-13 대	258.3	
			12	원당동 991-14 대	258.2	
			13	원당동 991-15 대	258.4	
	③	1,390.3	1	원당동 991-1 대	278.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1 대	278.3	
			3	원당동 991-16 대	277.9	
4			원당동 991-17 대	278.0		
5			원당동 991-18 대	278.0		
⑤	1,792.6	1	원당동 993-14 대	255.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3-13 대	255.2		
		3	원당동 993-12 대	256.2		
		4	원당동 993-11 대	256.6		
		5	원당동 993-10 대	256.4		
		6	원당동 993-9 대	256.6		
		7	원당동 993-8 대	25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⑥	1,824.6		1	원당동 993-6 대	259.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3-5 대	259.8	
			3	원당동 993-4 대	260.9	
			4	원당동 993-3 대	261.0	
			5	원당동 993-2 대	260.8	
			6	원당동 993-1 대	261.1	
			7	원당동 993 대	261.1	
⑦	1,328.4		1	원당동 997-10 대	266.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7-9 대	265.6	
			3	원당동 997-8 대	265.8	
			4	원당동 997-7 대	264.9	
			5	원당동 997-6 대	265.3	
⑧	986.0		1	원당동 997-4 대	246.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7-3 대	246.0	
			3	원당동 997-2 대	246.9	
			4	원당동 997-1 대	247.0	
⑨	880.0		1	원당동 989-7 대	29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89-8 대	292.9	
			3	원당동 989-9 대	293.1	
⑩	1,065.0		1	원당동 1003-2 대	266.3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3-3 대	266.1	
			3	원당동 1003-5 대	266.1	
			4	원당동 1003-4 대	266.5	
⑪	2,530.3		1	원당동 1005-1 대	258.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5-2 대	252.7	
			3	원당동 1005-3 대	252.6	
			4	원당동 1005-4 대	252.6	
			5	원당동 1005-5 대	252.7	
			6	원당동 1005 대	250.4	
			7	원당동 1005-14 대	252.7	
			8	원당동 1005-13 대	252.7	
			9	원당동 1005-12 대	252.6	
			10	원당동 1005-11 대	252.8	
⑫	1,173.4		1	원당동 1005-7 대	293.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5-8 대	293.1	
			3	원당동 1005-10 대	293.4	
			4	원당동 1005-9 대	293.2	
⑬	2,079.0		1	원당동 1008-4 대	258.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8-3 대	259.0	
			3	원당동 1008-2 대	259.2	
			4	원당동 1008-1 대	258.2	
			5	원당동 1008 대	258.1	
			6	원당동 1008-5 대	261.7	
			7	원당동 1008-6 대	262.1	
			8	원당동 1008-7 대	262.1	
⑭	1,937.6		1	원당동 1000 대	276.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1000-28 대	277.0	
			3	원당동 1000-27 대	277.0	
			4	원당동 1000-26 대	277.0	
			5	원당동 1000-25 대	277.0	
			6	원당동 1000-24 대	27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⑮	3,255.9	7	원당동 1000-23 대	276.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원당동 1000-22 대	274.2	
			2	원당동 1000-21 대	275.0	
			3	원당동 1000-20 대	276.0	
			4	원당동 1000-19 대	276.0	
			5	원당동 1000-18 대	276.0	
			6	원당동 1000-17 대	275.9	
			7	원당동 1000-16 대	276.0	
			8	원당동 1000-15 대	275.9	
			9	원당동 1000-14 대	262.7	
			10	원당동 1000-13 대	262.0	
			11	원당동 1000-12 대	263.1	
			12	원당동 1000-11 대	263.1	
F15	①	1,716.6	1	당하동 1337-8대	24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37-7대	245.0	
			3	당하동 1337-6대	245.0	
			4	당하동 1337-5대	245.0	
			5	당하동 1337-4대	245.0	
			6	당하동 1337-3대	244.8	
			7	당하동 1337-2대	246.8	
	②	947.0	1	당하동 1342대	316.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2-1대	315.0	
			3	당하동 1342-2대	316.0	
	③	2,953.1	1	당하동 1340-1대	268.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0-2대	268.0	
			3	당하동 1340-3대	268.0	
			4	당하동 1340-4대	268.0	
			5	당하동 1340-5대	268.0	
			6	당하동 1340대	269.0	
			7	당하동 1340-10대	269.0	
			8	당하동 1340-9대	269.0	
			9	당하동 1340-8대	269.1	
			10	당하동 1340-7대	269.0	
			11	당하동	26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④	2,555.0		1340-6대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1	당하동 1336대	255.0	
			2	당하동 1336-1대	255.0	
			3	당하동 1336-2대	255.0	
			4	당하동 1336-3대	255.0	
			5	당하동 1336-4대	255.0	
			6	당하동 1336-5대	256.0	
			7	당하동 1336-6대	256.0	
			8	당하동 1336-7대	256.0	
			9	당하동 1336-8대	256.0	
	10	당하동 1336-9대	256.0			
	⑤	2,426.9	1	당하동 1343-8대	270.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3-7대	270.0	
			3	당하동 1343-6대	268.9	
			4	당하동 1343-5대	269.0	
			5	당하동 1343-4대	269.0	
			6	당하동 1343-3대	269.0	
			7	당하동 1343-2대	268.0	
			8	당하동 1343-1대	271.0	
			9	당하동 1343대	272.0	

2-2-1-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1	①	1,947.0	1	당하동 1286 대	649.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1 대	649.0	
			3	당하동 1286-2 대	649.0	
	②	1,876.2	1	당하동 1286-5 대	626.3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6 대	624.9	
			3	당하동 1286-7 대	625.0	
	③	1,763.9	1	당하동 1286-9 대	58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6-10 대	588.0	
			3	당하동 1286-11 대	587.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2	①	2,329.0	1	당하동 1282-2 대	777.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2-3 대	776.0	
			3	당하동 1282-4 대	776.0	
근생3	①	5,114.0	1	당하동 1280 대	1,10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0-1 대	1,003.0	
			3	당하동 1280-2 대	1,003.0	
			4	당하동 1280-3 대	1,003.0	
			5	당하동 1280-4 대	1,004.0	
	②	6,408.5	1	당하동 1280-6 대	1,053.5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80-7 대	1,052.0	
			3	당하동 1280-8 대	1,052.0	
			4	당하동 1280-9 대	1,051.0	
			5	당하동 1280-11 대	1,100.0	
근생4	①	3,511.3	1	당하동 1243 대	877.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3-1 대	877.9	
			3	당하동 1243-2 대	878.5	
			4	당하동 1243-3 대	877.0	
근생5	①	1,693.8	1	당하동 1248 대	57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48-1 대	567.0	
			3	당하동 1248-2 대	556.8	
	②	639.5	1	당하동 1246-10 대	639.5	• 필지분할불가
			2	당하동 1250-1 대	719.6	
	③	1,438.6	1	당하동 1250-1 대	719.6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50-2 대	719.0	
	④	615.3	1	당하동 1246 대	615.3	• 필지분할불가
			1	당하동 1246-2 대	679.6	
			2	당하동 1246-3 대	679.8	
			3	당하동 1246-4 대	678.1	
			1	당하동 1246-6 대	1,000.0	
2			당하동 1246-7 대	958.3		
⑥	2,916.6	2	당하동 1246-7 대	958.3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당하동 1246-8 대	958.3		
근생6	①	2,409.1	1	당하동 1256-6 대	60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56-7 대	601.8	
			3	당하동 1256-8 대	602.1	
			4	당하동 1256-9 대	602.2	
근생7	①	1,619.9	1	당하동 1229-12 대	54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229-13 대	539.9	
			3	당하동 1229-14 대	540.0	
근생8	①	1,361.5	1	원당동 989 대	746.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989-10 대	614.6	
	②	1,977.9	1	원당동 995 대	659.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원당동 995-1 대	659.0	
			3	원당동 995-2 대	659.0	
	③	565.2	1	원당동 995-4 대	565.2	• 필지분할불가
			1	원당동 1000-8 대	704.8	
			2	원당동 1000-9 대	704.1	
근생24	①	1,966.0	1	당하동 1346대	656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2	당하동 1346-1대	655	
			3	당하동 1346-2대	655	
	②	1,063.0	1	당하동 1346-4대	531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346-5대	532	
	③	2,065.0	1	당하동 1348-6대	68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2	당하동 1348-5대	688	3개의 필지를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당하동 1348-4대	688	
근생27	①	3,600.0	1	원당동 1018-1 대	1,80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18-2 대	1,800.0	

2-2-1-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A1	-	43,894.0	당하동 1314-2 대	43,8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 분할 불허, 합병 불허 • 영구임대 (AA5, AA10-2, AA19, AA35-2) • 국민임대 (AA5, AA7, AA10-2, AA19, AA34, AA35-2) • 임대 (AA26, AA27, AA30, AA31) • 행복주택 (AA9, AA35-1)
AA2	-	68,818.0	당하동 1276-2 대	68,818.0	
AA3	-	40,736.0	당하동 1318-8 대	40,736.0	
AA4	-	57,122.0	당하동 1272-2 대	57,122.0	
AA5	-	32,871.0	당하동 1272-4 대	32,871.0	
AA6	-	40,514	-	40,514	
AA7	-	35,941	-	35,941	
AA8	-	18,169.0	당하동 1305-1 대	18,169.0	
AA9	-	47,962.0	원당동 1094 대	47,962.0	
AA10-1	-	82,176.5	원당동 1026-1 대	82,176.5	
AA10-2	-	38,625.0	원당동 1026 대	38,625.0	
AA11	-	76,618.0	원당동 1014 대	76,618.0	
AA12-1	-	42,974.0	원당동 987 대	42,974.0	
AA12-2	-	88,622.0	원당동 987-1 대	88,622.0	
AA13-1	-	42,566.0	원당동 1020-6 대	42,566.0	
AA13-2	-	57,531.0	원당동 1020-5 대	57,531.0	
AA14	-	55,091.5	원당동 1020-1 대	55,091.5	
AA34	-	55,778.0	당하동 1327-1 대	55,778.0	
AA35-1	-	30,257.0	당하동 1335-3 대	30,257.0	
AA35-2	-	42,492.0	당하동 1335-2 대	42,492.0	
AB1	-	34,047.0	당하동 1311-1 대	34,047.0	
AB2	-	57,524.0	당하동 1314 대	57,524.0	
AB3-1	-	41,342.0	당하동 1316-2 대	41,342.0	
AB3-2	-	65,934.0	당하동 1316-1 대	65,934.0	
AB4	-	69,448.0	당하동 1318-6 대	69,448.0	
AB5	-	44,971.0	당하동 1274 대	44,971.0	
AB6	-	45,732.0	당하동 1254-1 대	45,732.0	
AB9	-	31,541.0	원당동 1082-3 대	31,541.0	
AB10	-	31,188.0	원당동 1084-1 대	31,188.0	
AB11	-	21,818.0	원당동 1063 대	21,818.0	
AB12	-	19,487.0	원당동 1065-2 대	19,487.0	
AB13	-	47,099.0	원당동 1063-2 대	47,099.0	
AB14	-	74,574.0	원당동 1024 대	74,574.0	
AB15-1	-	65,087.0	원당동 1022-1 대	65,087.0	
AB15-2	-	59,667.0	원당동 1022 대	59,667.0	
AB16	-	85,540.0	원당동 1018 대	85,540.0	

2-2-1-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RC1	-	19,759.0	원당동 1061-1 대	19,759.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70%이상, 80%미만
RC3	-	18,448.0	당하동 1235 대	18,448.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RC4	-	19,958.0	당하동 1233-1 대	19,958.0	• 필지 분할 불허, 공동주택의 비율 : 80%이상, 90%미만

2-2-1-5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23,883.6	-		123,883.6	
C1	①	12,975	1	원당동 1059-2 대	4,27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3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선에 따라 분할가능
			2	원당동 1059-1 대	4,529.0	
			3	원당동 1059 대	4,173.0	
C2	①	8,444.0	1	원당동 1067-4 대	1,71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67-3 대	1,718.0	
			3	원당동 1067-2 대	1,717.0	
			4	원당동 1067-1 대	1,717.0	
			5	원당동 1067 대	1,574.0	
C3	①	10,010.6	1	당하동 1237-4 대	1,959.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7-3 대	2,010.7	
			3	당하동 1237-2 대	2,013.3	
			4	당하동 1237-1 대	2,013.1	
			5	당하동 1237 대	2,013.6	
C4	①	6,190.5	1	당하동 1235-10 대	1,548.9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5-9 대	1,546.9	
			3	당하동 1235-8 대	1,547.1	
			4	당하동 1235-7 대	1,547.6	
C5	①	7,651.0	1	당하동 1235-2 대	2,55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당하동 1235-3 대	2,550.0	
			3	당하동 1235-4 대	2,550.0	
C6	①	2,392.0	1	원당동 1030-10 대	798.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11 대	798.0	
			3	원당동 1030-12 대	796.0	
	②	3,951.0	1	원당동 1030-8 대	963.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7 대	996.0	
			3	원당동 1030-6 대	996.0	
			4	원당동 1030-5 대	996.0	
	③	3,698.0	1	원당동 1030-3 대	924.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0-2 대	925.0	
			3	원당동 1030-1 대	924.0	
			4	원당동 1030 대	925.0	
	C7	①	1,080.0	1	원당동 1033-4 대	1,080.0
②		2,182.0	1	원당동 1033-2 대	1,09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3-1 대	1,09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③	2,135.0	1	원당동 1033-7 대	1,067.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3-8 대	1,068.0			
	④	2,182.0	1	원당동 1033-10 대	1,091.0			
			2	원당동 1033-11 대	1,091.0			
C8	①	4,951.0	1	원당동 1035-5 대	1,651.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35-4 대	1,650.0			
			3	원당동 1035-3 대	1,650.0			
	②	3,854.0	1	원당동 1035-1 대	1,927.0			
			2	원당동 1035 대	1,927.0			
C9	①	5,279.0	1	원당동 1028 대	5,279.0	• 필지분할불가		
	②	9,734.5	1	원당동 1028-2 대	9,734.5	• 필지분할불가		
C10	①	3,820.0	1	원당동 1040-5 대	1,274.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0-4 대	1,273.0			
			3	원당동 1040-3 대	1,273.0			
	②	2,887.0	1	원당동 1040-1 대	1,443.0			
			2	원당동 1040 대	1,444.0			
C11	①	3,842.0	1	원당동 1043-7 대	960.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3-6 대	961.0			
			3	원당동 1043-5 대	960.0			
			4	원당동 1043-4 대	961.0			
	②	2,060.0	1	원당동 1043-2 대	1,030.0			
			2	원당동 1043-1 대	1,030.0			
	③	3,427.0	1	원당동 1043-10 대	1,714.0			
			2	원당동 1043-11 대	1,713.0			
	④	2,735.0	1	원당동 1043-13 대	1,367.0			
			2	원당동 1043-14 대	1,368.0			
	C12	①	4,044.0	1	원당동 1041 대		2,022.0	• 필지분할불가, 연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원당동 1041-1 대		2,022.0	
②		4,702.0	1	원당동 1041-3 대	2,340.0			
			2	원당동 1041-4 대	2,362.0			
③		5,495.0	1	원당동 1041-6 대	1,832.0			
			2	원당동 1041-7 대	1,831.0			
			3	원당동 1041-8 대	1,832.0			
④		4,162.0	1	원당동 1041-10 대	2,081.0			
			2	원당동 1041-11 대	2,081.0			

2-2-1-6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업무1	-	2,41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5 대	2,410.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2	-	1,7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4 대	1,700.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3	-	23,30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1 대	23,306.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4	-	23,30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41-2 대	23,306.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5	-	2,61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 대	2,617.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6	-	2,768.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8-3 대	2,768.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16	-	19,268.9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2-1대	19,268.9	•3필지 이내 분할가능
업무17	-	16,72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29대	16,723.0	•3필지 이내 분할가능

2-2-1-7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1) 유치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유1	-	5,34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5 학	5,340.0	
유2	-	1,23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2 학	1,236.0	
유3	-	2,14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3 학	2,147.0	
유4	-	4,20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5-4 학	4,202.0	
유5	-	1,21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6-11 대	1,210.0	
유11	-	2,700.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3 대	2,700.3	

(2) 초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초1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6 학	14,000.0	
초2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 학	14,000.0	
초3	-	14,001.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4-2 학	14,001.0	
초4	-	14,026.6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2 학	14,026.6	
초5	-	14,024.5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5 학	14,024.5	

(3) 중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중1	-	14,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8 학	14,000.0	
중2	-	14,000.2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3 학	14,000.2	
중3	-	15,000	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85임 일원	15,000	
중4	-	14,930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6-22학 일원	14,930	불로중학교
중5	-	15,0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179-6임 일원	15,000	
중6	-	15,000	인천시 서구 불로동 247-16잡 일원	15,000	

(4) 고등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고1	-	15,007.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2 학	15,007.0	
고2	-	15,000.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16-1 학	15,000.3	

(5) 교육연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교육1	-	15,411.0	인천시 서구 당하동 350-2대 일원	15,411.0	인천영어마을
교육2	-	6,878.0	인천시 서구 당하동 549학 일원	6,878.0	서구영어마을

(6) 특수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특1	-	12,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7대	12,000.0	

2-2-1-8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주2	-	1,225.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02 차	1,225.0	
주3	-	901.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8-6 차	901.0	
주5	-	1,419.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82-1 차	1,419.0	
주6	-	2,846.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7 차	2,846.0	
주7	-	2,255.3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2 차	2,255.3	
주8	-	3,477.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67-5 차	3,477.0	
주9	-	2,311.2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0 차	2,311.2	
주10	-	1,921.8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5-6 차	1,921.8	
주11	-	1,05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5 차	1,055.0	
주12	-	1,17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3-12 차	1,175.0	
주13	-	1,68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3-9 차	1,682.0	
주14	-	3,784.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1 차	3,784.0	
주15	-	1,868.9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8-11 차	1,868.9	
주16	-	1,761.1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58 차	1,761.1	
주17	-	3,092.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00-7 차	3,092.0	
주18	-	778.7	인천시 서구 원당동 997 차	778.7	
주36	-	1,31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2차	1,313.0	
주47	-	1,060.7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73차	1,060.7	
주53	-	65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2-3차	653.0	

(2) 종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종2	-	1,964.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8-1 종	1,964.0	
종3	-	1,33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0-1 종	1,330.0	
종4	-	1,659.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92 종	1,659.0	
종5	-	3,414.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 종	3,414.0	
종6	-	2,263.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1 종	2,263.0	
종8	-	2,695.1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20-3 종	2,695.1	
종9	-	3,280.3	원당동 1000-6 종	3,280.3	
종16	-	1,34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48-1대	1,340.0	

(3) 문화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복1	-	4,899.4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38 대	4,899.4	

(4) 문화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1	-	18,383.0	인천시 서구 원당동 산82-1임 일원	18,383.0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1	-	1,919.1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6-3 주	1,919.1	가스충전소
위2	-	1,448	인천시 서구 원당동 2전 일원	1,448	주유소
위4	-	1,525	인천시 서구 당하동 665답 일원	1,525	주유소
위5	-	1,443.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3대	1,443.0	주유소
위6	-	1,47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33-4대	1,470.0	가스충전소



(6)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가2	-	25.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41-14 잡	25.0	

(7) 하수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오1	-	4,620.0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8-2 잡	4,620.0	오수중계펌프장

(8) 우수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저1	-	10,95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312-5 유	10,956.0	저류시설
저2	-	6,256.0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78 유	6,256.0	저류시설 (수변공원1 중복결정)

(9) 하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천1	-	102,090.7	인천시 서구 원당동 1081 천 일원	102,090.7	계양천(지방2급)
천2	-	31,907.8	인천시 서구 당하동 11232 천 일원	31,907.8	소하천(매천)

※ 천1에 도로중복 면적 5,724㎡(도로중복 4,906㎡,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00㎡) 포함

※ 천2에 도로중복 면적 2,652㎡(도로중복 2,092㎡,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560㎡) 포함

(10) 도시지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필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도시16	-	35,550	1	당하동 1325-1대	3,338	• 필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25대	9,895	
			3	당하동 1325-3대	9,431	
			4	당하동 1325-2 대	12,886	

(11) 물류유통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필 지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유통1-1	-	54,474.6	1	당하동 1312 대	14,804.6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1 대	20,963.0	
			3	당하동 1312-2 대	18,707.0	
유통1-2	-	37,016.0	1	당하동 1312-3 대	15,693.0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4 대	21,323.0	
유통2	-	37,505.0	-	당하동 1350대	37,505.0	• 가감속차로 1,055.9㎡ 도로 결정 및 기부채납에 따른 획지면적 감소
유통3	-	66,064.0	-	당하동 1333대	66,064.0	•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가능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필 지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유통1-1	-	54,474.6	1	당하동 1312 대	14,804.6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1 대	20,963.0	
			3	당하동 1312-2 대	18,707.0	
유통1-2	-	37,016.0	1	당하동 1312-3 대	15,693.0	• 필지/획지간 공동건축 가능
			2	당하동 1312-4 대	21,323.0	
유통2	-	36,499.1	-	당하동 1350대	36,499.1	
유통3	-	66,064.0	-	당하동 1333대	66,064.0	• 대지분할가능선 지정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가능

◦ 물류유통시설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통2	당하동 1350대	· 면적 변경 - 37,505.0㎡ → 36,449.1㎡ 감)1,055.9㎡	· 가감속차로 1,055.9㎡ 도로 결정 및 무상귀속에 따른 획지면적 감소

(12) 통신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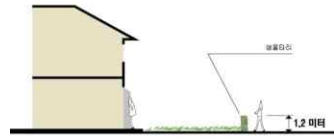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통신1	-	94.7	원당동 1020-8 잡	94.7	

2-2-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2-2-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의 용도는 교육용 근린생활시설 및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D1(일반형), RD2(점포형) 로 구분하며, <별표 1-1>에 따라 허용용도로 지정된 점포겸용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지침 1편 [1-1-5-9](점포겸용 주택)’의 규정을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완충녹지 등에 면하여 1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 진출입구 등을 고려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목재, PC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내·외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자재 사용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함 - 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 재료도 이에 포함함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를 불허함.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 이상으로의 차이가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함
E1~E10, F1~F18	E1~E10, F1~F18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40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권장함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며 또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또는 모임, 외쪽형식의 경사지붕으로 설치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가능 함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 지붕 상부의 돌출을 불허하며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계단탑, 물탱크탑을 제외한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미터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실외기 및 안테나 등)는 전면 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함 -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함 •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색채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적용함 - 점포겸용 주택의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하며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가구수	• <별표 1-1>에 따름



<별표 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세대수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RD1 (일반형)	RD2 (점포형)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 위치 : 1층 또는 지하 1층 • 규모 : 총 연면적(지하 1층 포함)의 4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기준용적률(%)		• 80% 이하	• 180% 이하
최고층수		• 2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E1, E2	• F1~F3, F15
1필지당 가구수		• 2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별표 1-2>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필지번호	필지면적(m ²)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m ²)	용적률(%)
E1	20,912.1	87	218	240	80% 이하
E2	13,473.1	56	140	241	80% 이하

필지번호	필지면적(m ²)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m ²)	용적률(%)
F1	23,181.4	88	220	263	180% 이하
F2	14,051.4	53	133	265	180% 이하
F3	24,697.0	93	232	266	180% 이하
F15	10,598.6	40	100	265	180% 이하

2-2-2-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8, 근생24, 근생27	근생1~ 근생8, 근생24, 근생27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의 용도표시는 NL1(간선형), NL2(일반형), NL3(수변형)로 구분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은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L3(수변형)은 3층 이상 건축한계선과 2층이하 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입면 다양성을 도모함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거지역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함 NL3(수변형)의 지붕은 옥상공간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평지붕으로 설치하되, 지붕수평투영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면적에서 경사구배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을 설치할 수 있음 경사지붕 및 평지붕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5-3]의 내용에 따름 외벽의 재료,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서터는 투시형 서터를 설치함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함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실외기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를 지양함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 위치와 연계하여 덕트나 샤프트를 설치함 노대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건축물 정면의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함 차폐시설은 형태 · 재료 · 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 재료와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조성함 노대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쓰레기 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등은 가로환경, 미관, 악취, 방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보행동선에서 차폐 및 분리하고 각 건물별로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설치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작업동선이 효율적이고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재함을 구비하여야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편 [3-6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1(간선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3*5

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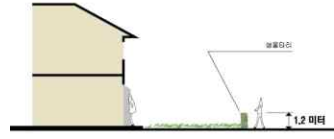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2(일반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 근생6*8, 근생24, 근생27

주) NL2(일반형) 근린생활시설 중 근생13(정송빌딩)의 경우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기준을 적용

도면 번호	위치 (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의 용도는 교육용 근린생활시설 및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취사시설의 설치를 불허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D1(일반형), RD2(점포형)로 구분하며, <별표 1-1>에 따라 허용용도로 지정된 점포겸용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행지침 1편 [1-1-5-9](점포겸용 주택)’의 규정을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완충녹지 등에 면하여 1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 진출입구 등을 고려함 		
E1~E2, F1~F3, F15	E1~E2, F1~F3, F15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반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목재, PC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 첨단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내·외장재는 환경 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자재 사용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자재’라 함은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말함 - 천연자연재료’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흙, 목재, 석재, 천연직물 등이 있으며 환경부하 저감 재료도 이에 포함함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를 불허함.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 이상으로의 차이가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함 		
		E1~E10, F1~F18	E1~E10, F1~F18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4이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권장함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경사도는 1:1 ~ 1:3 범위로 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며 또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또는 모임, 외쪽형식의 경사지붕으로 설치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가능 함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 물탱크 등의 옥탑 지붕 상부의 돌출을 불허하며 단, 점포겸용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계단탑, 물탱크탑을 제외한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4.5미터 혹은 평균 1개 층고 이하로 허용하며, 각종설비(실외기 및 안테나 등)는 전면 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함 -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함 • 담장, 대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적용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적용함 - 점포겸용 주택의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하며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에 따름



<별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L3(수변형)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완구, 서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복합유통계입제공업의 시설 제외)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해당블록		• 근생2

2-2-2-3 공동주택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 AA5, AA8~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AA1~ AA5, AA8~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표시는 RM(아파트용지)로 표시함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건폐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은<별표 3-2>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계획을 참조함. 단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2>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함, 단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층수 변화의 경우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권장함 인접 주거공간(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공간에 2개층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하며 단,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높 이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공지(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2]'의 규정을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8]'의 규정을 따름 "중층(11층~15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9]'의 규정을 따름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0]'의 규정을 따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다음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1]'의 기준에 따름 - 단, 대지형상이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3]'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1-1-5-34]'의 규정을 따름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계획하여야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AA1~ AA5, AA8~	AA1~ AA5, AA8~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AA14, AA34~ AA35, AB1~ AB6, AB9~ AB16		<p>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보행자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음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미터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퍼센트 이하의 자연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1.5미터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법면과 옹벽설치가 가능하며, 옹벽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미터 높이를 초과하는 옹벽은 설치를 불허함 - 단,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4.5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미터이상 높이의 옹벽설치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함 - 옹벽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불허함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 높이의 3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가능 함
AA1~ AA5, AA8~ AA14, AA34~ AA35,	AA1~ AA5, AA8~ AA14, AA34~ AA35,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 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함)를 제한하며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의 주거동은 8호 이하 또는 100미터 이하로 함 - 11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거동은 6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16층 이상의 주거동은 4호 이하 또는 60미터 이하로 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 주거동의 길이는 60미터 이내로 계획하며, 탑상형 아파트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함 •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재질 변화, 색채 변화, 외관의 디자인 변화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며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 등이 지붕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함 • 공동주택용지내 1개 주동의 입면적은 3,500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되, 25층 이상 입면적은 20% 범위 내 완화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입면적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1-1-5-3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지붕의 형태는 크게 경사지붕, 곡선지붕, 평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10분의 4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함 - 10층 이하 아파트의 지붕(옥탑부 포함)은 경사지붕을 권장함 - 11층 이상 아파트의 지붕은 평지붕의 옥상녹화를 권장함 • 향후 생활여건의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융통형 구조"로 할 것을 권장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 단위세대의 평면 변화가 용이한 구조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도 면 번 호	위 치 (가 구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AB1~ AB6, AB9~ AB16	AB1~ AB6, AB9~ AB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함 - 필로티구조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1-1-5-37]’의 규정을 따름 •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내 담장 조성시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방음벽 설치시,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료와 형태를 결정함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함 • 발코니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층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마감 재료는 외벽과 차이를 두어 조성하도록 권장함 • 기타 건축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아파트(10층 이하)의 경우에는 옥탑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옥탑부의 입면을 주동의 입면과 차별화하여 디자인 함 - 물탱크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함 - 공동주택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에 만들어 차폐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6미터 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단,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름

<별표 3-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M (아파트용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A1~AA5, AA8~AA14, AA34~AA35, AB1~AB6, AB9~AB16

<별표 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용적률(%)	배치구간	비 고
AA1	소계	43,894.0	721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60㎡-85㎡	28,566.0	503					
	85㎡ 초과	15,328.0	218					
AA2	소계	68,818.0	1,131	25	50% 이하	185% 이하		
	60㎡-85㎡	44,784.0	789					
	85㎡ 초과	24,034.0	342					
AA3	60㎡-85㎡	40,736.0	717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185% 이하	저층배치	
AA4	소계	57,122.0	938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60㎡-85㎡	37,149.0	654					
	85㎡ 초과	19,973.0	284					
AA5	소계	32,871.0	1,001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17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영구임대 국민임대
	60㎡ 이하	6,075.0	251					
	60㎡ 이하	26,796.0	750					
AA8	소계	18,169.0	404	25	50% 이하	195% 이하	탑상형배치	
	60㎡ 이하	10,899.0	269					
	60㎡-85㎡	7,270.0	135					
AA9	60㎡ 이하	47,962.0	1,971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배치	행복주택
AA10-1	소계	82,176.5	1,458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60㎡ 이하	26,060.4	583					
	60㎡-85㎡	34,637.2	583					
	85㎡ 초과	21,478.9	292					
AA10-2	소계	38,625.0	1,188	25	50% 이하	175% 이하	탑상형, 중층배치	영구임대 국민임대
	60㎡ 이하	7,160.0	298					
	60㎡ 이하	31,465.0	890					
AA11	소계	76,618.0	1,259	25	50% 이하	18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60㎡-85㎡	49,841.0	878					
	85㎡ 초과	26,777.0	381					
AA12-1	60㎡-85㎡	42,974.0	736	20	50% 이하	180% 이하	탑상형배치	
AA12-2	소계	88,622.0	1,417	20	50% 이하	180% 이하	탑상형배치	
	60㎡-85㎡	57,637.0	988					
	85㎡ 초과	30,985.0	429					
AA13-1	60㎡-85㎡	42,566.0	702	25	50% 이하	174% 이하	탑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AA13-2	60㎡-85㎡	57,531.0	964	25	50% 이하	176% 이하	탑상형배치	
AA14	소계	55,091.5	905	25	50% 이하	185% 이하	탑상형배치	
	60㎡-85㎡	35,829.1	631					
	85㎡ 초과	19,262.4	274					
AA34	60㎡ 이하	55,778.0	1,746	25	50% 이하	19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국민임대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용적률(%)	배치구간	비 고
AA35-1	60㎡ 이하	30,257.0	855	30	50% 이하	17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중층배치	행복주택
AA35-2	소계	42,492.0	1,083	30	50% 이하	17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저층배치, 중층배치	국민임대 영구임대
	60㎡ 이하	27,243.0	593					
	60㎡ 이하	15,249.0	490					
AB1	소계	34,047.0	873	25	50% 이하	22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20,412.0	581					
	60㎡-85㎡	13,635.0	292					
AB2	소계	57,524.0	1,073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탐상형, 건축물 직각배치	
	60㎡-85㎡	37,403.0	748					
	85㎡ 초과	20,121.0	325					
AB3-1	소계	41,342.0	789	25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26,880.0	550					
	85㎡ 초과	14,462.0	239					
AB3-2	소계	65,934.0	1,229	25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42,828.0	856					
	85㎡ 초과	23,106.0	373					
AB4	소계	69,448.0	1,295	25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50% 이하	210% 이하		
	60㎡-85㎡	45,170.0	903					
	85㎡ 초과	24,278.0	392					
AB5	60㎡-85㎡	44,971.0	920	30	50% 이하	215% 이하		
AB6	60㎡-85㎡	45,732.0	936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AB9	소계	31,541.0	773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8,934.0	515					
	60㎡-85㎡	12,607.0	258					
AB10	소계	31,188.0	764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8,722.0	509					
	60㎡-85㎡	12,466.0	255					
AB11	소계	21,818.0	535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3,122.0	357					
	60㎡-85㎡	8,696.0	178					
AB12	소계	19,487.0	477	30	50% 이하	215% 이하	탐상형배치	
	60㎡ 이하	11,663.0	317					
	60㎡-85㎡	7,824.0	160					
AB13	소계	47,099.0	941	30	50% 이하	225% 이하	탐상형배치	
	60㎡-85㎡	30,626.0	656					
	85㎡ 초과	16,473.0	285					
AB14	60㎡-85㎡	74,574.0	1,455	30	50% 이하	20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AB15-1	60㎡-85㎡	65,087.0	1,301	30	50% 이하	210%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AB15-2	60㎡-85㎡	59,667.0	1,193	30	50% 이하	210% 이하		
AB16	소계	85,540.0	1,557	30	50% 이하	20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85㎡	55,596.0	1,085					
	85㎡ 초과	29,944.0	472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 유형별 획지면적과 평균면적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2-2-2-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C1, RC3, RC4	RC1, RC3, RC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4-1>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주택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RC1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RC3, RC4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함 - 건축물 용도표시는 AC로 함 주거와 주거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부분의 주택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별표 4-2>참조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는 상업용지와의 조화를 도모토록 함
		기준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는 <별표 4-2>에 규정된 규모 이하로 하며,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은 <별표 4-2>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 및 [1-2-4-2]'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외 용도의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단, 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25층 이하 1개 주거동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하로 함 주동의 지붕형태는 평지붕에 옥상녹화를 권장함 건축물 1층 상업시설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부득이하게 담장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담장의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투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4-1>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C2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정심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주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해당블록		• RC1, RC3, RC4

주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에 한하여 설치가능

주2)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

<별표 4-2> 주상복합부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필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RC1	소계	19,759.0	390	35	60	250% 이하 (공동주택 : 200% 미만)
	60㎡~85㎡	14,804.0	307			
	85㎡ 초과	4,955.0	83			
RC3	소계	18,448.0	447	35	60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60㎡~85㎡	12,956.0	333			
	85㎡ 초과	5,492.0	114			
RC4	소계	19,958.0	483	35	60	300% 이하 (공동주택 : 270% 미만)
	60㎡~85㎡	13,980.0	359			
	85㎡ 초과	5,978.0	124			
합 계		58,165.0	1,320			

2-2-2-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12	C1~1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 5-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단 C9에 한해서는 가구 ①, ②를 통합하여 권장용도 비율 적용 상업시설용지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하며 1층부 전면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하여야 함 상업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상업시설용지에 건축이 가능한 최대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단,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공원 순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및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계단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건축물의 주전면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평균지반고 이상으로 2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실외기의 설치기준은 '시행지침 제2편 [2-3-4-7]'의 기준을 따름 환기탑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통행로에 설치하지 않음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함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함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6 도시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 및 가로 디자인 특화 조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지구단위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및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따름

<별표 5-1> 상업용지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일반상업지역(C)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건폐율(%)	• 70%이하	• 70%이하		• 70% 이하	
기준용적률(%)	• 700%이하	• 600%이하		• 500% 이하	
최고층수	-	• 12층 이하	• 20층 이하	• 8층 이하	• 10층 이하
해당블록	• C9	• C3, C5, C8, C12	• C1	• C6, C7, C10, C11	• C2, C4

주1) S3~S4의 해당블록별 최고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5-2>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구분		일반상업지역 C		
		S2(역세권)	S3(간선도로)	S4(이면도로)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업무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수련시설	×	×	×
	노유자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판매시설군	판매시설	●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위락시설	○	○	○
	숙박시설	○	×	○
교육연구 의료시설군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	○
산업시설군	공장	×	×	×
	창고시설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기타 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운수시설	×	×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교정 및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발전시설	×	×	×

주1) ●권장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불허용도

주2)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주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

2-2-2-5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업무1~6, 업무16~17	업무1~6, 업무16~1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PU(업무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을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 가능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업무1~6, 업무16~17, 7, 유1~5, 유11, 초1~5, 중1~6, 고1~2, 교육1~2, 특1	유1~5, 유11, 초1~5, 중1~6, 고1~2, 교육1~2, 특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E(교육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 경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1.2미터 이하의 담장, 대문 설치가능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과 주행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교육시설용지 내 지정된 건축한계선은 소음저감을 위한 이격기능으로 경비실 및 담장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제외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용지 중 '대1'은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별표 6-1> 업무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업무용지	
도면표시		PU1	PU2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업무시설(주민자치센터, 119안전센터, 순찰지구대, 우체국, 수도사업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업무시설(법원, 검찰청, 지방행정타운(자치행정, 교육청, 보건소, 세무서 등), 소방서, 경찰서)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1~2, 업무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3~4, 업무16~17 	

주1) 운동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나, 다목에 한함)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1	E2	E3	E4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병설유치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1~5, 유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2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속)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5	E6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1 	

주) 교육연구시설(교육1~2)은 준치시설로서 준치되는 동안에는 준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

2-2-2-6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 통	공 통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서로 조화를 고려함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 기준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8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규정에 따름
종2~6, 종8~9, 종16	종2~6, 종8~9, 종16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시설용지의 지붕 형태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RF(종교시설)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용지 중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준을 따름
가2	가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Z2(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오1	오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Z5(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저1~2	저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표시는 Z6(공급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건축물 용도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위1~2, 위4~6	위1~2, 위4~6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주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총(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블록내 모든시설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때 부대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주2~3, 주5~18, 주36, 주47, 주53	주2~3, 주5~18, 주36, 주47, 주53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P(자동차 관련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상 1층부에는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타	• 주차장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름
도시16	도시16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I(도시지원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유통1~3	유통1~3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DC(물류유통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통1	통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F(통신시설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문1	문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H(문화재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문복1	문복1	용도	• 건축물 용도표시는 CU(문화복합용지)로 표시함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별표 7-1>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F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이하, 해발고도 105m 이하(중1)
해당블록		• 종26, 종89, 종16

주1)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을 계획하는 경우 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다.

<별표 7-2>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Z2	Z5	Z6
	허용용도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 저류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기준용적률(%)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4층 이하, 해발고도 105m미만(가1)	• 4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가2	• 오1	• 저1~2

<별표 7-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주유	총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20% 이하
기준용적률(%)		• 100% 이하	• 8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4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위4)	• 4층 이하
해당블록		• 위2, 위4~5	• 위1, 위6

<별표 7-4>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도면표시		P1	P2	P3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기준용적률(%)		• 560% 이하	• 400% 이하	• 240% 이하
최고층수		• 7층 이하	• 5층 이하 (주14는 계획지반고에서 20m 이하)	• 3층 이하
해당블록		• 주8, 주10~13	• 주9, 주14	• 주2~3, 주5~7, 주15~18, 주36, 주47, 주53

주) 주14의 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별표 7-5>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I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업무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야항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		• 10층 이하 •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3)
해당블록		• 도시16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7-6> 물류유통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DC1	DC2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창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유통1-2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유통1-2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주) 유통1-1(서측3필지) : 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유통2에 한함) - 창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발고도 105m 미만(유통2에 한함)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1-1, 유통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2~3 	

<별표 7-7> 통신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통신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F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통신용 시설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1

<별표 7-8> 문화재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문화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H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이하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1

<별표 7-9> 문화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문화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U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전시장, 동·식물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점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 중 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 제외) 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 확보해야 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계획지반고에서 20m 미만) ※옥상층 부대시설 높이 포함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복1

2-2-3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3-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함.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진·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전제를 한 곳 이상으로 함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용주차를 위하여 따로 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2-2-3-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가 지정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급 이상의 도로 및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단지의 한 면이 생활가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가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함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준을 따름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주차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 당 '시행지침 제2편<표2-4-6>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함

2-2-3-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 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5 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2-2-3-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진·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2-2-3-7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p>대지내 차량 진·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p>부설 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p>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의료복합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2-2-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2-4-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E2, F1~F3, F15	E1~E2, F1~F3, F15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1-7]

2-2-4-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근생24, 근생27	근생1~8, 근생24, 근생27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3-5]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2-3-7]

2-2-4-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1~5, AA8~14, AB1~6, AB9~16	AA1~5, AA8~14, AB1~6, AB9~16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1-1-5-42], [2-4-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4-8]

2-2-4-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C1, RC3, RC4	RC1, RC3, RC4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5-6]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5-8]

2-2-4-5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C12	C1~C12	대지내공지	• 시행지침 [1-1-5-39], [1-1-5-40], [2-6-5]
		기타사항	•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6-7]

2-2-4-6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6, 업무16~17,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업무1~6, 업무16~17,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2-7-5]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지침 [1-1-5-81], [1-1-5-82], [1-1-5-83],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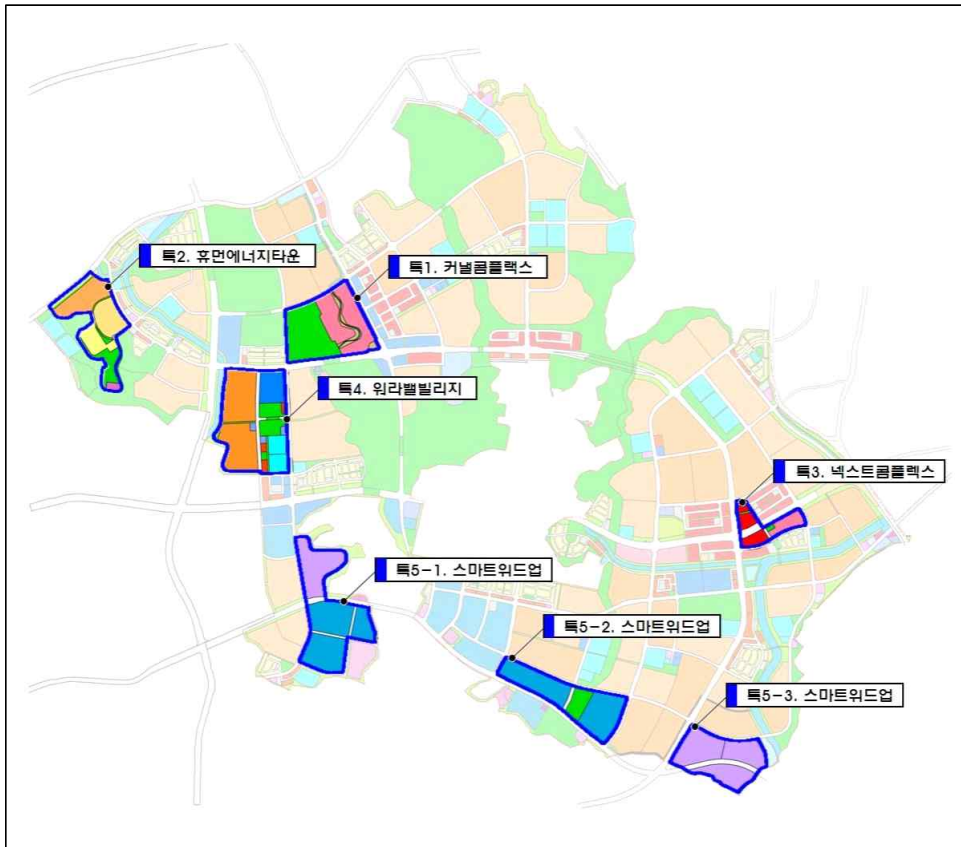
2-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3-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계	559,073	-	-
특3	59,136	1. C1, C9, RC1, 문공1	-
특5(1~3)	499,937	2.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

2-3-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특3	• C1, C9, RC1, 문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양천을 중심으로 상업 및 주거기능의 남부 생활권 중심지 조성 상업, 주거, 커뮤니티 등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 조성 	• 특화구역별 도시건축 기본구상안 반영
특5	•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구축 	



<그림2> 특별계획구역도

2-3-3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2-3-3-1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 콤플렉스

① 목적

- (가) 역세권 중심의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을 통한 문화도심공간 조성
- (나) 지능형 빌딩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접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빌딩 건립
- (다) 수직적 기능 융복합 및 창의적 건축물 계획을 통한 남부생활권의 랜드마크 구축

② 개요

- (라) 위치 : 인천검단지구 계양천 북측
- (마) 지정면적 : 59,136.0㎡
- (바)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사)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9,136.0	100.0	
상업용지	27,988.5	47.3	
주상복합	19,759.0	33.4	
공원	1,791.8	3.0	
도 로	9,596.7	16.2	

(아) 상업시설 및 주차장 건축계획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7,747.5	-	-	236,830.0	-
C1	12,975.0	70%	600%	77,850.0	20층 이하
C9	15,013.5	70%	700%	105,105.0	-
RC1	19,759.0	60%	250% (주거200%)	53,875.0	35층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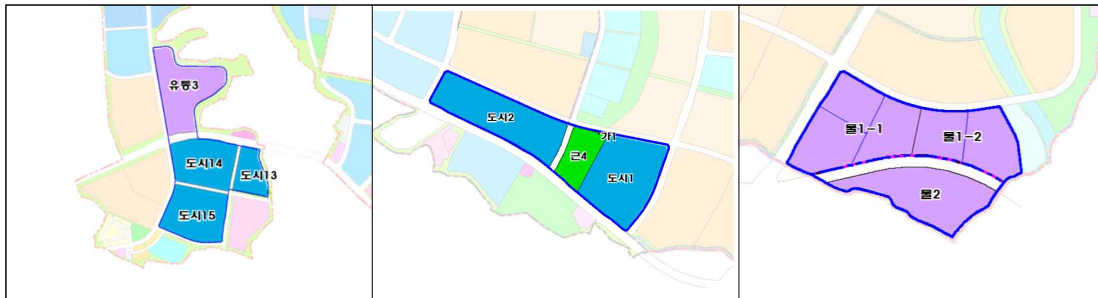
2-3-3-2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 위드업

(2) 목적

- (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 (다) 물류·유통·업무기능이 복합된 첨단물류 유통기지 건립

① 개요

- (라) 위치 :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인근 및 검단지구 남단, 계양천 인근
- (마) 지정면적 : 499,937㎡
- (바)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사)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99,937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53,300	50.7	
물류유통시설용지	195,059.6	39.0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20,931	4.2	
기타 용지	30,621.4	6.1	도로

(아)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 및 물류유통시설 계획>

구역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48,359.6	-	-	1,343,463	
도시1, 도시2, 도시13~15	253,300	60%	300%	758,307	10층 이하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1),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도시2)
유통1-1, 유통1-2	91,490.6	60%	300%	274,449	일부 해발고도 105m 미만
유통2~3	103,569	60%	300%	310,707	해발고도 105m 미만(유통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4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12.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8-12	인천광역시 서구 월당대로 864 (당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6-2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112 (당하동)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세번째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03-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06-3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95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5-1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70 (청라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랗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04-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22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월창동 394-3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110 (월창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75 (가정동)	20090710	인천서구 봉화대에서 부천 오정구로 가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1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18번길 34-1 (가좌동)	건물신축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3-24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3. 12. 11. ~ 2023. 12. 26.(16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 상 차 량	등록번호	394노2683 등 19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 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394노2683	S560 4Matic L	케**	2023.11.01.
2	04소4548	CLS400 d 4Matic	하**	2023.11.03
3	62소1027	S500 4Matic L	대**	2023.11.06
4	54서9895	베라크루즈(VERACRUZ)	(**	2023.11.08
5	378서9087	GLC300 4Matic Coupe	하**	2023.11.09
6	28가8279	오피러스	박**	2023.11.10
7	297구2114	K9	심**	2023.11.10
8	03라5662	엔터프라이즈	이**	2023.11.16
9	14루8968	마칸 터보	공**	2023.11.16
10	41고1114	그랜저(GRANDEUR)	디**	2023.11.16
11	86어8086	봉고III 1.2톤	디**	2023.11.16
12	96더3405	화인7.4ℓ액상비료살포트 럭	디**	2023.11.16
13	65보3405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150PS	케**	2023.11.17
14	88조7524	포터 II (PORTER II)	디**	2023.11.17
15	15너5933	G90	하**	2023.11.21
16	321거6411	Mercedes-Benz S450 4MATIC	하**	2023.11.23
17	88머0739	카라반(KARAVAN)보트트 레일러	서**	2023.11.24
18	138가5844	렉서스 ES300h	하**	2023.11.28
19	대전80라16 73	포터초장축슈퍼캡냉동탑차	유**	2023.11.2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2538호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3. 12. 11. ~ 2023. 12. 25.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원적로 85, 우신프라자 410호)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7번지 일원
 - (3) 구역면적: 6,580.6㎡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68명
 - (6) 사업시행자: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석)
 - (7) 변경내용: 조합원 권리변동 및 조합정관 변경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건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